1. 대지의 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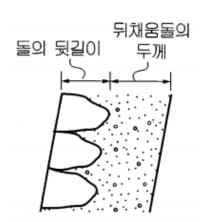
- 1.1 대지의 안전(법40조, 규칙25조)
- 1) 대지의 안전
 -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됨(배수 지장이 없거나 건축 용도상 방습 불필요시 예외).
 - 습한 토지, 물이 나올 우려 토지, 쓰레기 매립토지
 - → 성토, 지반개량 등 필요 조치 요
 - 대지 내 빗물, 오수 배출 처리 위한 하수관, 하수구, 저수탱크 등 시설 설치
 - 옹벽설치(건축사/구조기술사 안전확인 시 예외)
 - * 경사도가 1:1.5 이상으로 높이 1m이상 부분
 - * 높이 2m 이상 옹벽은 콘크리트 구조로(기술적 기준에 적합 시 예외)
 - * 외벽면에는 지지, 배수를 위한 시설 외 구조물 돌출 no
 - * 옹벽 배수(윗가장자리 2m 이내 새지 않는 배수관설치)
 - 성토는 인접대지보다 0.5m이상 금지
 - 옹벽 기술적 기준
 - * 석축 옹벽의 경사도, 이하

	1.5m까지	3m까지	5m까지
멧쌓기	1:0.30	1:0.35	1:0.40
찰쌓기	1:0.25	1:0.30	1:0.35

* 석축 옹벽 윗가장자리, 건축물 외벽면 이격거리

층수	1층	2층	3층 이상
이격거리(m)	1.5m	2m	3m

cf. 건물기초가 석축 기초 이하인 경우 예외



* 석축 옹벽의 돌의 뒷길이,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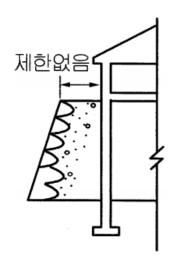
		1.5m까지	3m까지	5m까지
석축용돌 뒷길이(cm)		30	40	50
뒷채움	상부	30	30	30
돌두께(cm)	하부	40	50	50

* 석축 옹벽의 경사도

- 1. 대지의 조건
 - 1.1 대지의 안전(법40조, 규칙25조)
 - 1) 대지의 안전

높이 방식	1.5m까지	3m까지	5m까지
멧 쌓 기	0.3 1 1.5m	0.35 1 3m	0.40 1 5m
찰 쌓 기	0.25 1 3.5m	0.3 1 3m	0.35 1 5n

* 석축 옹벽 윗가장자리, 건축물 외벽면 이격거리 cf. 건물기초가 석축 기초 이하인 경우 예외



건축물 총수	1층	2층	3층 이상
띄우는 거리	1.5m이상	2m이상	3m이상
그림 상세	1.5m0l&	2m01&	3m01&

1. 대지의 조건

1.2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(법41조, 규26조)

1) 토지굴착

- 굴착 부분에 대한 현장 게시
- * 공사 시공자는 대지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, 위험 발생방지, 환경보존 등의 조치를 한 후 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함
- 게시 위반자에 대한 조치
- * 시장/군수/구청장은 위반자에 대해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명할 수 있음

2) 위험 발생 방지 조치

- 지중 수도관, 하수도관, 가스관, 케이블 등 파손 no
- 건축물, 공작물 근접 굴착 시 지반 구조내력 약화방지, 급격한 배수 피하는 등 토지붕괴 위해 방지
- 깊이 1.5m 이상 굴착 시 경사도 비율 이하로 하거나, 흙막이 설치(단, 지장이 없다고 인정 시 예외) eg. 1:x → 경암(0.5), 연암(1), 모래(1.8), 모래질흙(1.2), 점토/점성토(1.2), 암괴/호박돌 섞인 점성토(1.5)

3) 환경 보존을 위한 조치

-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/콘크리트를 사용, 토양 유실 방지
- 높이 3m 이내마다 비탈면적 1/5이상 면적 (단, 허가권자가 토질/경사도 고려, 붕괴 없다고 인정 시 예외)
- 비탈면에 토양 유실방지, 미관유지 나무/잔디(나무/잔디만으로 불안전 시 돌붙이기, 콘크리트 블록격자 등 구조물 설치)

2. 조경 및 공개공지

- 2.1 대지의 조경(법42조, 영27조, 규칙26조)
- 1) 대지의 조경 대상
 - 면적 200m² 이상인 대지에 건축 시 건축조례 기준에 따라 설치 eg. ~1,000m²: 5%, 1,000~2,000m²: 10%, 이상: 15%

2) 대지의 조경 대상 제외

- 녹지지역에 건축
- 공장 : 5,000m² 미만 대지 건축 시 / 연면적 합 1,500m²미만 시 / 산업단지 건축 시
- 염분이 함유된 대지
- 용도 특성상 조경 조치 불합리한 경우(조례지정)
- 축사,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
- 연면적 1,500m²미만 물류시설(주거, 상업지역 제외)
- 자연환경보존지역,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(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)의 건축물
- 조례 지정 건축물: 관광시설(관광지/단지, 관광/휴양 지구단위계획구역 내) / 전문휴양업시설, 종합휴양업시설 / 골프장

3) 조경 면적 기준(완화 시 조례에 의함)

공장 물류시설(주거/상업지역 제외)	연면적 2,000m² 이상: 대지면적 10% 이상 연면적 1,500m²~2,000m² 미만: 대지면적 5% 이상	
공항시설	대지면적 10%이상(이/착륙시설 면적 제외)	
철도건설법 역시설	대지면적 10%이상(선로, 승강장 제외 면적 기준)	
200이상~300m² 미만 대지의 건축물	대지면적 10%이상	

4) 옥상조경

옥상에 조경한 경우	옥상조경면적의 2/3 조경면적 산정
최대 인정면적	법적 전체조경 면적의 50% 이내

eg. 즉, 기준면적의 ½은 반드시 지표면에 설치

2. 조경 및 공개공지

2.2 공개공지 등의 확보(법43조, 영27조)

1) 대상지역

- 일반주거/준주거/상업/준공업지역
- 특별자치시장/도지사, 시장/군수/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·지정·공고한 지역

2) 대상 용도 및 규모

- 바닥면적 합 5,000m² 이상 문화/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(농수산물유통시설 외)/운수/업무/숙박시설
-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
3) 면적

- 대지면적의 10% 이하 범위(조례로 정함)
- 조경면적을 공개공지(간) 면적으로 가능

4) 설치시설

- 긴 의자,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, 필로티 구조 가능
- 연간 60일 이내 문화 행사 등 가능

5) 완화적용

- 건축물 용적률을 해당 용적률의 1.2배 완화
- 건축물 높이제한을 당해 높이 기준의 1.2배 완화
- 건축물로서 대상이 아니어도 공개공지 설치 시 완화적용 가능

3. 대지와 도로

- 3.1 대지와 도로의 관계(법44조, 영28조)
- 1)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
 - 대지는 2m 이상 도로(자동차 전용도로 제외)에 접해야 한다.
 - cf. 예외 *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 인정되는 경우 * 농지법에 따라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

 - *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. 공원. 유원지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에 접한 경우

2)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대지와 도로

- 연면적의 합 2,000m² 이상인 건축물(공장 3,000m²)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(자동차 전용도로제외)에 4m 이상을 접해야 함 cf. 예외 * 축사, 작물 재배사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- 3.2 도로의 지정·폐지 또는 변경(법45조, 규칙26조)
- 1)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·공고할 때
 - 당해 도로의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
 - cf. 예외 * 이해 관계인이 해외 거주 등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
 - *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, 사실상 도로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
- 2)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를 폐지·변경할 때
 - 당해 도로의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
 -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,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
- 3) 도로대장에 기재
 - 지정, 변경 시 도로관리대장에 기재, 관리

3. 대지와 도로

3.3 건축선의 지정(법46조, 영31조)

1) 건축선의 정의

-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
- 원칙: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

2)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의 건축선

-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: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1/2의 수평거리 후퇴 선
- 도로 반대쪽 경사지, 하천, 철도, 선로부지 등: 반대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 수평거리 후퇴선

3) 막다른 도로의 너비(건축선)

- 10m 미만: 2m 이상
- 10m 이상~35m 미만: 3m 이상
- 35m 이상: 6m 이상(읍/면 지역 4m)

4) 도로모퉁이 지정건축선(가각전제선)

- 8m 미만의 좁은 도로 모퉁이 → 통행, 시야 확보

교차각	당해도회	7+1-2144	
	6m 이상 8m 미만	4m 이상 6m 미만	교차도로 너비
90° 미만	4m	3m	6m 이상 8m 미만
	3m	2m	4m 이상 6m 미만
90° 이상	3m	2m	6m 이상 8m 미만
120° 미만	2m	2m	4m 이상 6m 미만

5) 지정건축선(by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/군수/구청장)

- 4m의 범위 안에서 따로 지정 가능(for 건축물 위치/환경 정비)
- 지정 시 미리 그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

3. 대지와 도로

3.4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(법47조)

-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. 다만, 지표 아래는 제외
-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.5m 이하에 있는 출입구, 창문,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 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없음

